

2023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3년 9월 26일(화) 15:0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1

3. 대학평의위원회(12명)

■참석의원 : 정동훈, 권인철, 정용식, 강성률, 이강훈, 천성오, 김태헌,
송영균, 김민수(9명)

■불참의원 : 유경선, 반중혁, 양근제(3명)

4. 안 건

가. 규정 제·개정(안)

-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심의 안건
- 2) 연구년 규정 개정(안)
- 3)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4)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5)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개정(안)
- 6)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 7) 광운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 8) 광운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규정 **제정**(안)
- 9) 연구윤리 규정 **제정**(안)
- 10)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안)
- 1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2) 규정류 관리 규정 개정(안)
- 13) 감사 규정 개정(안)

나. 202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5. 기타 협의 안건 : 대학평의위원회 기능

6.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 성진호 간사(이하 '간사')가 성원 및 기획관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 재적의원 12명 중 8명 참석
 - 재적의원 12명 중 9명 참석(15:23 김태헌 의원 입장)

- 정동훈 의장(이하 '의장')이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본 회의 상정 안건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관하다.

【규정 제·개정(안)】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김양래 대학원 교학부장(이하 '교학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권인철 의원이 증원 및 감원 기준을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원칙은 없으나 2년마다 최근 3개년 정원을 바탕으로 정원조정을 논의함을 답하다.
- 권인철 의원이 환경대학원 3개년 정원총원율이 가장 낮으나 이번에 스마트융합대학원에서 정원 조정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환경대학원 정원 자체가 가장 적고, 스마트융합대학원과 정원조정이 협의됨을 답하다.
- 정용식 의원이 특수대학원 모집인원이 증원이 필요할 경우 간접적인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3년 평균 정원총원율을 검토하여 논의하며, 장기적으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에 대한 조정 논의가 있을 예정임을 답하다.
- 이강훈 의원이 스마트융합대학원 모집정원이 58명으로 표에 기재되어 52명의 오타인지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58명이 52명으로 조정되고 이번에 50명으로 다시 조정하게 됨을 답하다.
- 의장이 표결에 앞서 제3차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인 '심의안건 찬/반 표결은 실명으로 회의록에 기재함'을 설명하고,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출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 찬성 표결 : 정동훈, 권인철, 정용식, 강성률, 이강훈, 천성오, 송영균, 김민수
- 의장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2) 연구년 규정 개정(안)

- 정석재 처장(이하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천성오 의원이 논문은 특정 절차를 통하여 발표되는 객관적 형태로 나타나는 데 예체능계열 공연 및 창작·지휘 등 실적은 공연의 규모와 형태 등의 세부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진행함을 답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3)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정용식 의원이 제11조 '특별임용교원'이 자구 수정이 필요함을 개진하다.
- 교무처장이 해당사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음을 답하다.
- 강성률 의원이 '일반전임'과 관련하여 '특별전임' 용어 자체의 검토가 필요함을 개진하다.
- 교무처장이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답하다.
- 권인철 의원이 본 규정이 개정된 후에 해당 '특별임용교원'이라는 용어는 다른 규정에서도 '비전임교원'으로 일괄 기획처에서 수정이 필요함을 개진하다.
- 의장이 제11조 '특별임용교원' 용어를 개정사항에 맞게 '비전임교원'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자문내용을 정리하고 **본건을 자문대로 안건을 종결하다.**

4)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강성률 의원이 규정명에는 '외국인 특별 전임'으로 사용되나 '외국인 특별전임'으로 붙여쓰는 경우가 있어 용어 사용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교무처장이 제1조에서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이하 '외국인전임')으로 생략표기하고 있음을 답하다.
- 권인철 의원이 글로벌센터 소속 교수 중 16시간 이상 강의를 하여 연구의 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도 특별연구학기를 수행할 경우에 연구성과 제출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해당 사항은 다음 안건의 규정 개정(안) 설명에 포함됨을 답하다.
- 의장이 외국인 및 한국인으로 특별전임교원을 분리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급여와 급여 산정 방식이 다름을 답하다.
- 의장이 특별연구학기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인 특별전임교원에게만 시행해온 것인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맞다고 답하고, 특별연구학기에 대하여 외국인 특별전임교원도 적용하여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를 검토하였음을 답하다.
- 의장이 외국인 및 한국인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대학발전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부합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한국인 특별전임교원과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통일성 있게 정리되려면 이에 우선하여 정리할 사항이 많음을 답하다. 또한 한국인 특별전임교원과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의 의무가 다름을 설명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5)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권인철 의원이 개정(안) 제9조(처우)에 「교원보수 규정」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정년트랙 교수 중 호봉제 교수에 대한 보수에 해당함을 개진하다.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8조와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이와 관련됨을 추가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언급해야 함을 개진하다.
- 교무처장이 이와 관련하여 「연구년 규정」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후에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김재요 처장(이하 '기획처장') 기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관련 법령의 인용 표기법을 꺾쇠 표기(「」) 하는 것으로 통일되게 수정하면서 추가된 것이라, 현행 규정대로 '교원보수 규정에서'로 둔다면 '교원보수 규정'을 폭넓게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교무처장이 이 역시 '교원보수 규정에 의하여' 등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아 고유명사인 관련 규정명(교원보수 규정)으로 해석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개진하다.
- 권인철 의원이 교원보수 규정은 본교 규정에서 고유명사화 되어 표기에 상관 없이 수정이 필요함을 개진하다.
- 의장이 기획처장 제안에 따라 교원보수에 관한 규정 등으로 폭넓게 지칭한다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다시 질의하다.
- 권인철 의원이 본교 규정류에서 해당 사항이 고유명사로 사용되므로 해석의 혼란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지칭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의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교무처장이 「연구년 규정」도 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문내용에 맞게 추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음을 답하다.
- 의장이 제9조제3항 관련 규정 명시사항은 향후에 「연구년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자문내용을 정리하고 **본건을 자문대로 안건을 종결하다.**

6)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 기획처장이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간사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7) 광운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 정영욱 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민수 의원이 안전관리 관련한 규정이 관리처가 아닌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하는지 질의하다.
- 산학협력단장이 안전관리팀 신설로 향후 정리가 필요하나, 상위법령에서 관리 책임이 산학협력단에서 있음을 명시한 경우가 있음을 답하다. 연구실 건물에 대한 관리는 관리처에서 관장하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산학협력단 소속의 연구자들에 대한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다. 교직원 및 학생은 학교의 관리를 받으며, 산학협력단의 관리 대상은 산학협력단 소속의 연구원들임을 추가 설명하다.
- 권인철 의원이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질의하다.
- 엄원경 팀장이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생물안전관리책임자임으로 지정하였음을 답하고, 생물안전관리자는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관리책임자만 지정했음을 답하다.
- 권인철 의원이 연구과제책임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질의하다.
- 엄원경 팀장이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의미하여, 설치·운영책임자는 연구책임자도 될 수 있고 연구자도 될 수 있음을 답하다.
- 천성오 의원이 대학본부 안전관리팀 담당자와 산학협력단 생물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 관계 및 협업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다.
- 엄원경 팀장이 관련 법령이 다름을 답하고, BL등급 승인에 대하여 관리처 주관인 아닌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관련 내용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답하다. 고위험성을 다루는 실험은 현재 BL2등급은 아니므로 사고발생 조사 및 보고에 관한 건은 과기정통부로 산학협력단에서 보고 조치해야하는 사항이므로 관리처와 함께 진행함을 답하다. 최종책임자는 총장임을 답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8) 광운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규정 제정(안)

- 산학협력단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9) 연구윤리 규정 제정(안)

- 산학협력단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권인철 의원이 연구윤리 관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다.
- 엄원경 팀장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에 대한 사항을 진행함을 답하다. 이해 상충 등의 사항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논문실적 게재 및 학회 발표 전에 연구윤리를 갖추었는지 확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답하다. 동물 실험윤리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도 진행되고 있음을 답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0)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안)

- 산학협력단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장이 상위 기관 지침대로 내용을 작성한 것인지 질의하다.
- 산학협력단장이 맞다고 답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산학협력단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권인철 의원이 검증시효 삭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어떤 조항인지 질의하다.
- 엄원경 팀장이 제4조제7항과 제9조제2항제3호임을 답하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논문이 게재된 날이 본 규정 개정 이후부터는 검증시효가 없음을 의미함을 답하다.
- 강성률 의원이 퇴임한 교수의 경우 연구비 반납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다.
- 산학협력단장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위기관에 통보하고, 상위기관에서 회수 결정을 심의하고, 결정 사항에 따라 연구비 반납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함을 답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12) 규정류 관리 규정 개정(안)

- 성진호 팀장(이하 '평가감사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장이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본 회의안건 중에 상정되는 안건이 어떤 안건인지 질의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제1안건인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며, 제14안건인 202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자문안건으로 상정됨을 답하다.
- 권인철 의원이 제12조 개정에 따르면 규정류는 대학평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는 규정을 심의하는 해당 위원회인 기획관리위원회 권한에 집중하는 것임을 답하다.
- 기획처장이 기타 협의 안건인 '대학평의회 기능'이 이와 관련함을 설명하고 발언을 요청하다.
- 의장이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참고자료 61쪽에서 85쪽 내용을 참고하여 줄 것을 설명하고, 본 개정(안)은 학칙 개정을 사전 공고하여 학칙 개정 절차는 강화하는 사항이며, 규정류는 기획관리위원회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 절차를 변경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기획처장이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대학평의회 기능 검토가 논의된 그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다.
- 권인철 의원이 타 대학 사례와 법적인 해석(판례 등)을 참고하더라도 본교 대학평의회에서 규정류를 자문하는 것이 낭비적인 요소로 생각되지 않음을 개진하다.
- 김태헌 의원이 대학평의회에서 상정되는 안건 이외에는 해당 정보를 학생이 알 수 있는 채널이 없음을 설명하다. 대학평의회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규정류의 개정 논의가 향후 왜 유지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개진하다.
- 의장이 기획처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학칙은 사전공고를 통하여 의견을 받는 것으로 강화되며, 규정류의 개정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 '최근 개정 규정' 항목에 탑재되어있어 현재에도 모든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답하다. 규정 개정과정에서 통로가 없다고 한다면, 대학평의회에서도 자문안건이므로 의견을 주는 것이므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반영되어야 함을 답하다.
- 의장이 위원회에 학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김태헌 의원의 의견을 답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이 포함된 위원회가 현재에도 있음을 답하다.
- 김태헌 의원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위원회 외에는 장학위원회 등 다수 제외된 것이 많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모든 위원회에 학생이 구성원으로 위촉이 필요함을 추가 설명하다.
- 의장이 학생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민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구성원의 의견수렴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임을 답하다.
- 의장이 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학평의원회의 발언 내용이나 의제가 반드시 상정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개진하다. 여지까지와 같이 자문안건도 심의안건과 동일하게 학교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검토할 것임을 추가 개진하다.
- 의장이 제12조 대학평의원회 상정 절차 삭제에 관하여 자문내용을 정리하고 본건을 자문대로 안건을 종결하다.

13) 감사 규정 개정(안)

- 평가감사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장이 참고자료에 감사주기에 대하여 '국민대'를 참고하여 조항을 개정하면서 '성신여대'를 참고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사항의 설명을 요청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현재 매년 1회로 명시되어있는데 개정 규정도 실질적으로는 감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를 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규정상에 명시하지 않음을 답하고, 감사원 감사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주기에 맞춰 내부감사 준비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올해와 같이 계획되지 않은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내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규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중복성이 발생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감사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규정에 없이 무엇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지 질의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해당 규정의 제12조와 제13조에 감사계획이 정의됨을 답하다.
- 정용식 의원이 감사는 보통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나, 제11조 감사위원회 구성에 보면 총장이 모든 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하는 등으로의 보완이 필요함을 개진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부분으로 수정하였음을 답하다. 향후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갈 것임을 답하다.
- 강성률 의원이 세종대 사례를 설명하며,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을 개진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사립대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당연직으로 구성이 많았으

며, 우리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감사부서의 독립성 등은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임을 답하다.

- 의장이 자문내용을 정리하고 **본건을 자문대로 안건을 종결하다.**

【202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오준희 팀장(이하 '기획예산팀장')이 202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의장이 202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태헌 의원이 교비 근로 통합 및 인원 감축으로 발생한 예산이 어느 항목에 반영되었는지 질의하다.
- 최혜정 과장이 자료 5쪽에서 일반근로장학금 2억 감소를 반영함을 답하다.
- 천성오 의원이 대학 홈페이지 2022학년도 결산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보임을 개진하다. 급여성으로 판단되는 교원의 급여 및 상여금, 제 수당과 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제 수당이 감소함을 설명하다. 매년 호봉 상승으로 증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함을 개진하다. 58세대로 표현되는 교원의 퇴직에 따른 신입교원과 교원의 급여 격차와 2022년 이후로 퇴직한 직원의 적절한 충원되지 않은 것들이 반영되었음을 개진하다. 대학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원과 직원의 최소한 임금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학교에서 이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개진하다.

7. 기타 협의 안건

- 의장이 기타 협의 안건은 앞서 논의하였음을 설명하다.
- 김민수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기획처에서 학교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보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개진하다.
- 의장이 차기 회의부터 안건 상정이 변화될 것임에 우려를 표시하다.
- 강성률 의원이 학생의 의견 반영에 대한 김태헌 의원의 개진사항이 공감되며, 기획처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의장이 기획관리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여 학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을 개진하다.
- 기획처장이 타 대학 사례를 보면 규정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는 대학도 있고, 교무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등에서 담당하는 등 해당 절차가 다양함을 설명하다. 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하는 것 보다 규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이 입안되어야 함을 개진하다.

- 의장이 이에 동의하며 대학평의원회 자문사항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입안하는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위원회에 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개진하다.
- 기획처장이 해당 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기획처에서 강제할 수는 없음을 답하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견을 준다면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하다.

8. 폐회

- 의장이 추가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정된 안건 심의와 자문, 기타 협의를 마친 후 차기 회의개최일을 안내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 2023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 2023. 11. 28.(화) 15:00

붙 임 : 회의자료 각 1부. 끝.

2023년 9월 26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정 동 훈	
부 의 장	권 인 철	(서명)
평 의 원	정 용 식	
평 의 원	이 강 훈	(서명)
평 의 원	유 경 선	(서명)
평 의 원	강 성 루	
평 의 원	천 성 오	
평 의 원	양 근 제	(서명)
평 의 원	김 태 현	
평 의 원	송 영 균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평 의 원	반 중 혁	(서명)